

규정류(제정·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 : 장안대학교 학칙 시행규칙
2. 규정류(제정·개정)사유 :
 - 간호교육 평가인증 편람 II.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에 근거하여 학칙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3. 주요내용 :
 - 제4조(교과이수)
4. 시행 예정일 또는 요청일 : 공포일부터 시행
5. 참고사항
 - 가. 관련규정: 해당사항 없음
 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6. 첨부사항
 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(개정 시) 1부.
 - 나. 규정류(제정·개정)안 전문 1부.

2026년 / 월 / 일

소관부서 : 기획처

홍정화

관련부서 : 교무처

유경은

[서식 제2호] (개정 2024.4.4.)

신·구조문대비표

규정명 : 장안대학교 학칙 시행규칙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제1조 ~ 제3조 (생략)	제1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	
제4조(교과이수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<u>실험실습실</u> 기는 1주 2시간씩 30시간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	제4조(교과이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씩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<u>실험실습실</u> 기는 1주 2시간씩 30시간 이상의 실습을, <u>간호학과 임상실습 교육</u> 은 1주 3시간씩 45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26.00.00.)	
④ (생략) ⑤ <삭제 2020.4.28.>	④ (현행과 같음) ⑤ <삭제 2020.4.28.>	
제5조 ~ 제53조 (생략)	제5조 ~ 제53조 (현행과 같음)	
	부칙	
	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시행규칙은 2026년 00월 00일로부터 시행한다.	